

# 특집

이 아니므로 집유일원화의 효율성 저하가 예상되므로 최대한 관련업계가 동회에 동참토록 하되 동참하지 않는 단체에 대하여는 별도 비상설 협의체를 구성하여 낙농업의 공동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협

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진흥회 참여를 반대하는 일부지역의 낙농가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슬기를 모아주기 바란다.

끝으로 낙농진흥회는 구성원 낙

농가의 권익과 생존권 확보에 진력하고 낙농업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산업으로 낙농부국의 기반을 다지는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사랑과 정성을 다하기를 바란다. ☺



이상섭  
강원도지회장

## 낙진법개정은 낙농업의 천재일우의 기회이다

낙농진흥회는 법이 정하는 제반업무에 안정을 기하고 업무 하나하나를 면밀하게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시뮬레이션(가상모형실험)화하여 사전에 문제점을 파악하여 다시 계획을 수정하고 완벽한 사업을 구사하여야 한다.  
한 번의 실수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 뿐만 아니라 낙농산업의 퇴보를 가져 올 것이다

세계 무역기구(WTO)의 체제에 의한 새로운 세계시장 경제의 원리는 우리나라의 산업전반에 많은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고 있으며 한편, 미래에 대한 예측력과 그에 상응한 대비책을 강구하지 아니하고 안일하게 변화에 민첩 대응하지 못한 여러 기업군이 결국은 부도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음은 우리 낙농 산업에게도 새로운 사실이 아님을 국내굴지의 유가공업체의 일례로도 알 수 있다.

그동안 수입 개방의 물결을 타고 밀려드는 외국산 우유 및 유가공 제품의 범람으로 우리 낙농산업은 점점 사양산업인양 치부되어 왔으며, 낙농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국내 낙농산업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듯 하였다. 그나마 낙농산업

의 중흥을 위하여 이미 15년전부터 낙농진흥법의 개정을 외쳐왔건만 일부 낙농관련 단체와 낙농가의 반대로 계속 국회에 계류된 채 14대 국회에서도 폐기되고 말았으나 지난 7월 30일 제 184회 임시 국회에서 낙농진흥법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우리 낙농산업의 가장 큰 숙원 과제가 해결되었다.

그동안 이법의 개정을 위하여 앞장서 추진한 협회집행부는 물론 물심양면으로 협조를 아끼지 아니한 정부의 관계자, 농림해양수산위원, 낙농관련조합장을 그리고, 낙농가 여러분께 이지면을 통해서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 낙농진흥회가 하여야 할 일들을 두루 없이 적고자 한다.

낙농진흥법 개정 법률안의 시행

일자는 1999년 1월 1일부터 이므로 이법의 개정을 추진한 주체들은 이법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2001년부터 완전히 개방되는 외국산 쇠고기에 대하여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고 국내 유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하는 다양한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수립하여 국내 낙농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물론 이법의 개정에 적극 반대한 단체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포용력을 보여주어 우리는 이제 하나라는 일체감과 동지애를 느껴야하는 데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내부 하나의 적이 외부 열의 적보다 더 위협적이라는 것을 이법의 개정을 추진하면서 느꼈으리라 믿으며 더 이상 우리 내부의 적이 양산되

지 않도록 하는데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법의 시행에 앞서 이법 개정의 취지가 단순히 사양화로 치닫는 국내 낙농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개정 되었다고 인식하여서는 안된다. 낙농가와 유가공업체는 국민들에게 양질의 고급 우유를 저렴하게 공급하여 국민 식생활의 일정 부분을 전담해야 하며 국내 제 1차 산업의 구조적 안정을 꾀하고자 함에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다른 식품에 비하여 에너지 밀도가 높으며 언제 어디서나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품목으로 21세기에는 확고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지혜와 힘을 함께 모아야 할 시점인 것이다.

이제 그 계기가 마련된 이상 더 이상의 불만을 제기하지 말고 지금부터 완벽하게 국민과 낙농가와 유가공업체를 위하는 길을 함께 깊이 생각하고 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낙농진흥법 개정 법률안에 제 3조에 의하면 낙농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낙농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2. 낙농기술 향상을 위한 지도에 관한사항
3. 원유 및 유제품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
4. 원유의 품질향상과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5. 원유의 집유, 수송 및 비축시설과 장비에 관한 사항
6. 학교 우유급식, 소비홍보 등 유제품 수요확대에 관한사항
7. 기타 낙농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다.

또 제 6조에 의한 진흥회의 업

무는 다음과 같다.

1.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 계획의 수립
2. 원유구입 또는 판매에 관한 업무
3. 원유의 품질향상에 관한 업무
4. 유제품 수매비축 방출 및 수출입에 관한 업무
5. 우유 유제품의 소비촉진, 홍보 및 시장개척에 관한업무
6. 기타 낙농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위의 개정안은 매우 만족스런 내용이 아닐수 없다. 그러나 모든 법에는 항상 독소조항이 내포되어 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예를 들면 낙농진흥법 개정법률안 제 3조 3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낙농진흥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즉,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내재되어 있다.

낙농진흥회는 개정법률안을 완전히 이해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개정 법률안에 걸림돌로 적용돼서는 안되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낙농진흥회는 빠른시일내에 법이 정하는 테두리 내에서 모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되 시일에 쫓겨 부실계획을 양산해서는 안된다.

법의 존엄성과 생명력은 그 법의 시행력과 시행에 따른 부산물의 경제성에서 평가된다. 고름우유 사건에 따른 유가공업체의 부도에 의한 낙농가의 우유폐기 사건, 소값 폭락, 외국산 쇠고기의 국내산 둔갑등 사회전반에서 일고 있는 쇠고기와 유가공품의 불신이

법이 제정되지 않아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낙농진흥회는 법이 정하는 제반업무에 안정을 기하고 업무 하나하나를 면밀하게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시뮬레이션(가상모험실험)화하여 사전에 문제점을 파악하여 다시 계획을 수정하고 완벽한 사업을 구사하여야 한다.

한 번의 실수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 뿐만 아니라 낙농산업의 퇴보로 이어지며 선진외국의 제품과의 경쟁력의 격차는 더욱 심화가 될 것이다.

이법의 시행일이 15개월 정도 남아 있으므로 진흥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각 소그룹별로 업무를 분담하고 전문가를 위촉하여 국내 낙농산업의 재 도약의 계기가 되도록 그 기틀을 마련하도록 힘써 줄 것을 기대해 본다.

낙농진흥회는 본연의 업무가 낙농산업의 구조개선,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조절, 가격안정과 유통구조의 개선을 통한 낙농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에 있음을 항상 생각하고 그 생각이 바로 계획으로 옮겨지고 시행되며 그 결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발견하고자 하는 노력이 항상 뒤따라야 한다.

만약 잘못된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을 피하지 말고 서로 분담하는 자세를 보여 줄 때 낙농가와 유가공업체의 21세기의 미래는 97년 가을하늘 만큼이나 투명하고 깊으리라 생각되며, 이 개정 법률안에 천재일우의 기회임을 다시한번 깨닫고 모든 지혜와 역량을 함께 동원하여 국내 낙농산업에 신바람을 불어 넣어 주기를 바란다. ☺